

의안번호	제483호
의 결 연 월 일	2013년 월 일 (제320회)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13년 4월 26일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3
----------	-----

제출연월일 : 2013. 4. 2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이유

학교규칙 제정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 절차 폐지(초·중등교육법 개정, 2012. 3. 21.)와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의 지방직 교육공무원 전환(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2013. 6. 12.)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교육장 위임 사항 중 “관할학교의 학칙 제정·변경 인가(단, 사립 초·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를 삭제함(안 제5조 제14호)
- 나. 교육장 위임 사항으로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0호)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3. 4. 19. ~ 2013. 4. 23.)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p> <p>1. ~ 13. (생략)</p> <p>14. <u>관할학교의 학칙 제정·변경인가(단, 사립 초·중학교의 학칙 제정에 관한 사항은 제외)</u></p> <p>15. ~ 29. (생략)</p> <p><u><신설></u></p>	<p>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 ----- -----.</p> <p>1. ~ 13. (현행과 같음)</p> <p><u><삭제></u></p> <p>15. ~ 29. (현행과 같음)</p> <p><u>30.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의 근무부서 지정</u></p>

관계법령

□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3.6.12.][법률 제11527호, 2012.12.1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2.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3.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

② 이 법에서 "교육전문직원"이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2.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3. 교육 관계 법령이나 교육 관계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

④ 이 법에서 "교육행정기관"이란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교육연구기관"이란 교육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 또는 공립의 기관을 말한다.

⑥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⑦ 이 법에서 "직위"란 1명의 교육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

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강임"이란 같은 종류의 직무에서 하위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⑪ 이 법에서 "복직"이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8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은 교육감이 임용한다.

제60조(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별채용 및 전직 등) 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에는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채용을 거쳐 상호 전직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원 종류 및 교류인원 등을 달리하여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제61조(「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1항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 본문 중 "제6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제63조제2항 또는 제65조의2"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보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3조제2항제4호"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로 본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조의2, 제6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74조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2013-11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법」이 시·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11527호, 2012. 12. 11. 공포, 2013. 6.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임용권을 대통령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국가직 교육공무원 상호간 자유로운 진출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2. 1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참조 : 지방교육자치과, 전화 02-2100-6697, 팩스 02-2100-66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과학기술부 지방교육자치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0-760)

붙임 :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의2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항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의2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의2제5호를 같은 조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중 법 제9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6.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6조의2, 제7조의 교사와 수석교사 또는 교장·교감·원장·원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 중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7.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9조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제39조의 장학사·교육연구사와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간 상호 임용하는 경우

제14조제2항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임용권의 위임)</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3의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p> <p>4. (생략)</p> <p>② ~ ④ (생략)</p> <p>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한다.</p> <p>1. ~ 3. (생략)</p> <p>4.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전보</p> <p>5. 교육감 소속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의 승급·겸임·직위해제·휴직 및 복직</p> <p>6. 삭제</p> <p>7. 교육감소속의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임용</p> <p>8.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p>	<p>제3조(임용권의 위임)</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6.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현행	개정안
<p>⑥ (생략)</p> <p>1. ~ 2. (생략)</p> <p>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p> <p>① ~ ③ (생략)</p> <p>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의 임용권을 해당 교육감에게 재위임한다.</p> <p>1. <u>제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u></p> <p>2. (생략)</p> <p>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p> <p>1. ~ 4. (생략)</p> <p><신 설></p> <p><신 설></p>	<p>⑥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3조의2(임용권의 재위임)</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중 법 제9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u></p> <p>6. <u>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6조의2, 제7조의 교사와</u></p>

현행	개정안
<p><신설></p> <p>5. (생략)</p> <p>제14조(승진임용방법)</p> <p>① (생략)</p> <p>②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특수자격이 있는 자"라 함은 농업계, 공업계, 수산·해운계, 예·체능계의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과출신 <u>교육전문직</u>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과목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과를 졸업한 자를 말한다.</p>	<p><u>수석교사 또는 교장·교감·원장·원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 중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u></p> <p>7. <u>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29조의 장학관·교육연구원 및 제39조의 장학사·교육연구사와 법 제58조의 교육전문직원간 상호 임용하는 경우</u></p> <p>8.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14조(승진임용방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교육전문직원</u> -----, ----- ----- -----.</p>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2.3.21.][법률 제11384호, 2012.3.21.]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부조직법 [시행 2013.3.23.][법률 제11690호, 2013.3.23.]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6.][법률 제11724호, 2013.4.5.]

제26조(사무의 위임·위탁 등) ①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교육기관 또는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당해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구·출장소 또는 읍·면·동의 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